

* 축산법 시행

- ◇ 농림부에서는 지난 3월 8일에
- ◇ 칙 개정령을 공포하였다.
- ◇ 규칙과 비교하면 아래와 같
- ◇ 제 26조, 제 27조, 제 28조 및

파 거 시 행 규 칙	개 정령
<p>제25조 (부화업자의 등록)</p> <p>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초생추 또는 중추를 판매할 목적으로 종란을 부화하는 자(이하 "부화업자"라 한다)는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화장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화장의 명칭과 소재지 2. 경영자의 성명 3. 부화기의 종류별 능력과 대수 4. 종란생산장의 명칭과 소재지 5. 초생추의 생산계획 6. 부화기간 	<p>제25조 (부화업자의 등록)</p> <p>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생추 또는 중추를 판매할 목적으로 종란을 부화하고자 하는 자(이하 "부화업자"라 한다)는 제28조의 2의 부화장 시설기준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화장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화장의 명칭 및 소재지 2. 경영자의 성명 3. 부화기의 종류별 능력 및 대수 4. 종란생산장의 명칭 및 소재지와 종계학보수 5. 초생추의 생산계획 6. 부화기간 <p>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중 변경이 있을 때에는 20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p>
<p>제26조 (종란의 검사)</p> <p>①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부화업자가 부화업에 공하는 종란의 품종과 규격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p> <p>② 전항의 종란의 규격기준은 농림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p>	<p>제26조 (종란의 검사)</p> <p>①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부화업자가 부화용에 공하는 종란을 연 1회 이상 검사하여야 한다.</p> <p>② 전항의 종란의 검사기준은 농림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p>
<p>제27조 (초생추 품종보증서)</p> <p>① 부화업자는 초생추 또는 중추를 판매할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초생추 품종보증서를 매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p> <p>② 전항의 보증서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검인을 받아야 한다.</p>	<p>제27조 (초생추 품종보증서)</p> <p>① 항은 전(前)과 동(同)</p> <p>② 항 삭제</p>

규칙 개령정

농림부령 478호 축산법시행규 ◇
 이번의 개정령을 과거 시행 ◇
 으며 개정된 부분은 제25조, ◇
 별표이다. ◇

과거시행규칙	개정령
제28조 (종란의 사용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란(卵)은 종란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① 추백리 양성계를 보유한 종체장으로 양성계 도태증명이 없는 종체장에서 생산한 란 ② 종란 규격에 미달된 란 ③ 계통이 명확하지 아니한 란	제28조 (종란의 사용제한) 전(前)과 동(同)
	제28조2 (부화장의 시설기준) 부화업자의 부화장의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지 12호 서식중 “구청장, 시장, 군수검인”란을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부화업자의 등록을 받은 자로서 그 시설이 제28조 2의 시설기준에 미달되는 자는 이 영 시행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부화장시설기준

- 부화장과 계사는 질병에 감염됨이 없도록 다른 구내에 격리 시설하여야 한다.
- 그 부화사내의 시설은 사무실·부화실·보관실(종란·집란·소독)·초생추실(보관·감별·출하)·소각장·변소등을 구비하여 부화실·보관실 및 초생추실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바닥은 콘크리트등 내구성이 있고 견고한 재료를 사용하고 배수에 편리한 구조를 갖출 것.
 - 내벽은 내수성재료를 사용하며 벽은 콘크리트·

- 타일·석조등 견고한 물질로서 방수와 청소에 편리하도록 축조할 것.
- 다. 천정은 낙진·낙수를 방지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청결하도록 할 것.
- 라. 전강한 병아리를 생산할 수 있는 충분한 온도·습도 및 환기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할 것.
- 마. 방충, 방서시설을 할 것.
- 3. 초생추수송상자는 소독하여 1회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4. 부화장의 출입구에는 소독반을 설치하여야 한다.